

2019년 1/4분기 지방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

- 사업명 : 서울 청년 문자통역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2019년 3월~12월(10개월)
- 보조금 결정연월일 : 2019년 3월 19일
- 사업비

(단위 : 원, %)

구분	예산액	지출액		집행잔액	이자발생액	비고
		금액	비율			
계	25,000,000	24,576,550	98.31	423,450	-	
보조금	25,000,000	24,576,550	98.31	423,450	-	
자부담	-	-	-	-	-	

위와 같이 집행하고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.

2019년 05월 27일

제출자 : 단체명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

대표자 이 정 자 (직인)



서울특별시장 귀하

- | | |
|--|--------|
| ○ 실무책임자 : 직위 담당 | 성명 조명옥 |
| ○ 연락처 : (전화) 02-2039-5470 (FAX) 02-2039-5471 | |
| (E-mail) specialok01251@daum.net | |
| ○ 주소 : (03712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2길 16-1, 3층 | |

※ 첨부서류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|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|
| ③ 영수증.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| ④ 행사유인물.사진 등 1부 |
|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| |

2019년 2/4분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
사 업 명	서울 청년 문자통역지원사업					
사 업 기 간	2019. 03 ~ 12. (10개월)					
신청자 명칭 (성 명)	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	대 표 자	이정자			
소재지 (주 소)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70-1	전화번호	02-2039-5470			
지방보조금 교부신청 (단위: 천원)	총사업비	지방보조금			자기자본 부담액	보조금 보조율 (%)
		지 원 결정액	기 교부액	금 회 교부신청액		
	100,000	100,000	25,000	25,000	-	100
지방보조 사업목적	청년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 및 자기계발, 사회참여를 촉진함.					
지방보조 사업의 내용	취업·창업 관련 활동 및 취업 후 직무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문자통역지원					
<p>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19년 05월 27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단체명 :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(직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 귀하</p>						
<p>※ 첨부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계획서 1부(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) 2. 청구서(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) 1부 -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3.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. 청렴서약서 1부 5. 결제전용카드(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체크카드) 사본 1부 <p>※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</p>						

서울 청년 청각장애인 문자통역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으며,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(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) >

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97조)

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,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,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·폐지,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,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98조)

-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, 또는 대리인, 사용인,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

2019. 05. 27.

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

대표 이정자

(서명)

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부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

직책 과장 성명 권명희 (서명)

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부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

직책 사원 성명 조명옥 (서명)



저희 **우리은행** 은 커진 만큼 큰 보답을 드리겠습니다.

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님

계좌번호 **1005-401-649628**

예금과목 **기업자유예금(우리평생통장)**

실명확인필 **10-04-09(이월 - 0)**

대한민국정부
인 지 세
100원
남대문세무서장
선납승인 2017년 42083호



인감 사용

신고객번호 **052084230**

계좌관리점: **북가좌동지점**

개설일자: **2010-04-09** 전화: **02-303-3671**

통장발행점: **북가좌동지점**

발행일자: **2018-02-07** 전화: **02-303-3671**

(이 통장은 표지를 합하여 12장입니다)

출입금서 (10/37)

직통카드 BC카드 텔레뱅킹 PC뱅킹 자문이체 연필계좌
「 N 」 「 N 」 「 Y 」 「 Q 」 「 Q 」

통장일련번호 **005**
SWIFT 코드: **HVBKRRSEXXX**

약관적용안내

▶ 이 통장의 거래에는 예금거래기본약관, 신탁거래약관 및 해당 예금 개별약관을 적용하며, 우리 은행에 비치된 약관내용을 열람 또는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이용안내

- ▶ 가계무대적금 등 특별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은 대출을 받거나 집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집권설정 금액에 대하여 해당할수 만큼 특별금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▶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누설될 경우 예금이 부정 인출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.
- ▶ 통장, 인감, 현금저금 (CD) 카드, 신용카드 등을 분실시는 바로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신고하여 주십시오.
- ▶ 신고된 서명만으로 예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예금주가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.
 ≡ 통장, 현금카드, IC카드 분실신고 : 1588-5000 / 1599-5000
 신용(BC), 체크카드 분실신고 : 1588-5300

고객상담 : ☎ 1588-5000, 1599-5000 (해외에서 이용시 82-2-2006-5000)
「고객의 소리」접수 : ☎ 080-365-5000 (핸드폰 이용시 02-2008-5000)